

정 관

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

제 1 장 총 칙

제 1 조 (명 칭)

이 법인은 재단법인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라 한다.

제 2 조 (목 적)

이 법인은 비영리 법인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와 건강관리증진에 이바지함으로써 사회공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3 조 (사 업)

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.

1. 작업환경측정사업
2. 근로자 건강진단(일반, 특수)
3. 작업환경측정 및 근로자 건강진단을 위한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
4. 산업보건관리대행사업
5. 산업안전보건 정보수집 및 질병예방의 계몽사업
6. 근로자 질병의 조기 발견, 치료를 위한 진단검사 의학 분야의 연구개발 진단검사 사업
7. 근로자 질병에 대한 부설연구소 운영
8. 위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승인한 사업

제 4 조 (사무소)

- ①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46-5(안국동)에 둔다.
- ②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음 지역에 둔다.
 1.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암로 179(상암동)(서울디엠씨건강의원)
 2.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32(합정동)(합정의원)
 3.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원리 1001-2(서울디엠씨건강의원 포항분원)
 4.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332(가양동)(비엠엘의원)
 5. 서울특별시 종로구 윤보선길 48(안국동)(안국의원)
- ③ 법인은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분사무소의 설치 목적, 소재지, 사업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류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법인의 조직과 기구, 인사, 직원의 보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5 조 (공익사업의 운영원칙)

법인의 목적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무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실비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종목의 사업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6 조 (수익사업의 운영)

- ① 수익사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.
- ② 법인의 공익사업에서 얻은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 학교, 직업, 기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2 장 재산과 회계

제 7 조 (재 산)

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고, 기본재산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 하며, 그 목록은 별첨과 같다.

제 8 조 (재산의 관리)

- ① 법인이 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, 담보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, 권리의 포기를 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② 법인의 재산중 현금은 우편관서나 시중은행에 예치하여야 한다.
- ③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9 조 (회계연도)

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따른다.

제 10 조 (사업계획 및 예산)

- ① 법인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입 및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- ② 법인은 매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.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.
- ③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이 승인받지 못한 경우, 전년도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우선 집행하고 사후 이사회 추인을 받을 수 있다.

제 11 조 (회 계)

- ① 매년도 세제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거나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.
- ② 법인의 회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11 조의 2 (기부금품)

- ①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공헌활동에 관심있는 개인, 기관, 기업들로부터 기부금(품)을 접수 및 모금할 수 있다.
- ② 법인은 기부금(품)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목적에 맞게 활용하여야 한다.
- ③ 법인은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'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'을 공개한다.

제 12 조 (채무부담)

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 13 조 (임원의 보수)

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며, 사업운영을 전담하는 상임임원을 제외하고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

제 14 조 (재산의 보호)

- ① 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무상으로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- 1. 이 법인의 출연자
 - 2. 이 법인의 출연자 또는 임원과 「민법」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자
 - 3. 이 법인의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- ② 제1항 각 호 이외의 자가 법인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
제 3 장 임 원

제 15 조 (임 원)

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.

1. 이사장 1인
2. 상임이사 1인
3. 이사장, 상임이사를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이사
4. 감사 1인

제 16 조 (임원의 선임)

- ① 법인의 이사장 및 임원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- ② 법인은 목적사업을 전담하기 위한 상임이사를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.

제 17 조 (임원의 직무)

-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상임이사는 법인의 업무를 전담하며 이사장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며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.
-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1. 법인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 2.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
 3. 위 제1호,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관청에의 보고
 4. 위 제3호에 의한 시정요구 또는 보고를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의 소집요구
 5. 법인의 재산현황 또는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직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서 의견진술

제 18 조 (임원의 임기)

-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②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제 19 조 (임원의 결격사유)

-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 1.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
 2.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
 3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 4.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
- ② 임원으로 선출된 후 제 1항 각호에 해당한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되며 이사회에서 추인된다.
- ③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나 처의 삼촌이내의 혈족 관계에 있는 자의 이사 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사정수의 과반수를 초과하여 선임할 수 없다.
-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3항에 규정한 관계가 없는 자로 한다.

제 20 조 (자문위원, 고문, 전문위원)

- ① 법인에는 3인 이내의 자문위원과 약간 명의의 고문,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- ② 자문위원, 고문, 전문위원은 법인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 또는 사업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장이 이사회에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- ③ 자문위원, 고문, 전문위원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,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- ④ 자문위원, 고문,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- ⑤ 자문위원, 고문, 전문위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.

제 4 장 이 사 회

제 21 조 (이사회에의 구성)

- ① 이사회는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.
- ② 이사회에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이외에 각 이사의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은 배제한다.

제 22 조 (이사회회의 소집)

- ① 정례 이사회는 매년 2회 개최한다.
- ② 임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.
 1.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2.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 3. 재적이사 1/3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-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각 지부장 및 관계 직원을 이사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.

제 23 조 (이사회회의 의결사항)

- ①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.
 1.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고정 재산의 취득, 처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
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4. 임원(이사)의 임면에 관한 사항
 5. 지부의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6. 법인의 제규정의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 7. 지부의 이전에 관한 사항
 8. 주요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 9. 자문위원, 고문, 전문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 10.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11. 지부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
 12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- ② 이사장, 상임이사 및 이사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 1.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
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, 상임이사 또는 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사항.
- ③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사회 의결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승인을 갈음한다.
 1. 제1항 제6호에 따른 각종 규정 중 인사규정, 급여규정, 직제규정을 제외한 규정의 제정·개정·폐지

2. 제1항 제7호에 따른 지부의 이전

제 24 조 (이사회 운영)

이사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 운영규정을 별도로 정한다.

제 25 조 (의결 정족수)

이사회는 재적이사 2/3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의결한다.

제 26 조 (서면결의)

이사회는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. 다만,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·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없다.

제 27 조 (회의록)

이사회는 회의록은 의장 및 2인 이상의 이사가 서명날인 후 이를 보존한다.

제 5 장 집 행 기 관

제 28 조 (집행기관)

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둘 수 있으며,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각종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

제 6 장 장관개정 및 제규정

제 29 조 (정관 개정)

- ① 법인의 정관개정은 재적이사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정관개정이 이사회에서 의결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.

제 7 장 해산 및 청산

제 30 조 (해산사유)

- ① 이 법인은 천재, 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사회에서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산한다.
- ② 이 법인은 「민법」 제3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취소가 있는 경우에 해산한다.

제 31 조 (청산인)

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.

제 32 조 (재산처리)

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채무를 변제하고 기본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며, 잔여재산은 이사회 결의 거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의 목적이 유사한 비영리법인에 기증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정관변경(2011년 6월 30일) 제1조 명칭변경 및 개정
- 정관변경(2015년 12월 22일) 제4조 개정(분사무소 설치)
- 정관변경(2018년 1월 4일) 제1조 명칭변경
- 정관변경(2018년 10월 16일) 제4조 주소 이전 설치(분사무소)
- 정관변경(2019년 3월 26일) 제4조 주소 이전 설치(분사무소)
- 정관변경(2020년 10월 26일) 제4조 주소 이전 설치(분사무소)
- 정관변경(2022년 4월 29일) 제3조 개정 제4조 주소 이전설치(분사무소)
- 정관변경(2024년 2월 20일) 제4조 제1항 주사무소 주소변경/동조 제2항 분사무소 (안국의원) 설치 및 분사무소 명칭 추가
- 정관변경(2025년 4월 7일) 제11조의 2 기부금품 조항 신설